

조 례 안 예 고

통영시의회 공고 제 2022-9호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을 둘째 이후로 확대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통영시 보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불필요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제1호)
- 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둘째 이후 자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4호,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 별지 제2호 서식)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등

다. 의견제출 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1) 주 소: 우)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의회)
- (2) 전화번호: 055-650-2943(Fax. 055-650-2999)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셋째이후”를 각각 “둘째 이후”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셋째이후”를 “둘째 이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셋째이후”를 각각 “둘째 이후”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셋째이후”를 “셋째 이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셋째이후”를 “둘째 이후”로 한다.

제9조 중 “셋째이후”를 “둘째 이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셋째이후”를 “둘째 이후”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전>

(별지 제2호 서식)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대장

연번	신청인(부 또는 모)					셋째이후 자녀			신청일	최초 지급일	입금 계좌번호	환수일	환수 내역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 월일	관계	거주기간	성명	생년 월일	남/여					
					년 월								
					년 월								

<변경 후>

(별지 제2호 서식)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대장

연번	신청인(부 또는 모)					둘째 이후 자녀			신청일	최초 지급일	입금 계좌번호	환수일	환수 내역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 월일	관계	거주기간	성명	생년 월일	남/여					
					년 월								
					년 월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셋째이후 자녀</u>”란 제1호의 <u>자녀 중 셋째이후 모든 자녀</u>를 말한다.</p> <p>3. (생 략)</p> <p>4. “<u>셋째이후 자녀</u> 보육료”란 <u>셋째이후</u> 자녀 부모에게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지원해 주는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p> <p>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셋째이후</u>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p> <p>3. (생 략)</p> <p>제5조(지원대상) ① (생 략)</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4. -<u>둘째 이후</u> ----- <u>둘째 이후</u> ----- ----- ----- -----.</p> <p>제4조(지원사업)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둘째 이후</u> ----- --</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p>

②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시(市)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셋째이후 자녀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액 등) 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한다.

1. 2. (생략)
3.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신청시 100만원, 신청월로부터 6개월 후, 12개월 후에 각각 100만원 지급)

② ~ ⑤ (생략)

제8조(지원신청) ①·② (생략)

③ 읍·면·동장은 셋째이후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

② -----

----- 둘째 이후 -----
----- . ----- 둘
째 이후 -----

----- .

제7조(지원액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셋째 이후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둘째 이후 -----

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육료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대장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별지 제1호 서식)과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셋째이후 자녀여부

2. 3. (생략)

②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 비치) -----

----- 둘째 이후 -----

-----.

제10조(지원절차) ① -----

-----.

1. -----
둘째 이후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

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